

대학원 규정

1. 사회복지상담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복지상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학문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고 교수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7.1. 자구수정)(2017.11.1.개정)(2018.6.22 자구수정)(2019.4.24. 자구삭제)(2021.6.22. 개정)

제2조(대학원 구분) ① 본교에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2021.6.22. 신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제3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다만 연구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6.22. 신설)

- ②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전공과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별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21.6.22. 신설)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7조(입학지원 서류)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 및 전형료를 첨부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에 대하여는 시험이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한다.

제9조(입학사정)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사정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심의한다.(2010.3.1. 자구수정)

제10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2010.3.1. 자구수정)

제11조(편입학)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 및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2010.3.1. 자구수정)

-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본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15.10.12. 자구삭제)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 및 수학연한

제13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2018.6.22 자구수정)(2021.6.22 개정)

②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학기 중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021.6.22. 항 추가)

③ 제2항 외 시간의 수업을 개설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대상과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18.6.22 항 추가)(2021.6.22 자구수정)

제14조(수업연한) 대학원 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6.22 개정)

1. 석사학위과정 : 2년 이상

2. 학·석사연계과정 석사학위 과정: 1.5년 이상

제15조(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통산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원퇴학 및 수료

제16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③ 이미 납부한 등록(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총 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에 따른 휴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9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15조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를 하지 못한 자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21조(수료와 졸업) ①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졸업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심사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021.6.22. 항 추가)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2021.6.22. 조 명칭변경)

제 5 장 교과 및 학점

제22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3조(이수학점)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2010.3.1.자구수정)

② 학생이 매학기 신청할 수 있는 학점과 추가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른다.(2011.3.1.자구수정)

제24조(보충과목의 이수)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사학위의 전공이 석사학위과정 전공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보충과목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2010.3.1.학점수정)

② 보충과목의 수강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③ 보충과목의 지정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학업성적

제26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실 점	평 점	비 고
A+	100-95	4.5	
Ao	94-90	4.0	
B+	89-85	3.5	
Bo	84-80	3.0	
C+	79-75	2.5	
Co	74-70	2.0	
F	69이하	0	

제27조(학점인정)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4분의 3 이상이고, 학업성적의 등급이 Co(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8조(성적미달)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에 미달인 학생은 이를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학기에 한하여 조건부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29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 한다.(2010.3.1. 자구수정)(2019.4.24. 개정)

②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19.4.24. 개정)

제30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 3학기 정기등록 이후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인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2010.3.1.단서조항삭제)

제31조(논문심사)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전임교수와 출강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2조(논문심사 및 판정)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진행과 합격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심이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2019.4.24. 자구수정)
2.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점이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3조(졸업시험) (2010.3.1.조항삭제)

제34조(학위수여) ① 규정된 수업연한과 규정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졸업사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1.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된 자
2.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된 자

②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5.1.24.향신설)

제35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2]와 같다.(2017.11.1.개정)(2021.6.22.개정)

제36조(학위증서)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서로서 행한다.

제 8 장 상 별

제37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또는 현장실무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징계) 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공개강좌·연구과정·외국인학생 및 수료후 등록생

제39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설할 수 있다.(2019.4.24. 자구수정)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기간·장소·수강자격·수강인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40조(연구과정) 본 대학원에서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19.4.24. 자구수정)

1.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요건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2.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3. 연구 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4.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연구과정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1조(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입학할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2010.3.1.자구추가삽입)

제42조(수료후 등록생) ①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와 연구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료 후 등록생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록기간 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1. 3. 1. 신설)

제 10 장 직 제

제43조(조직) 사회복지상담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각 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2010.3.1.자구삭제)(2019.2.8.개정)

제44조(임기) 대학원장 및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2021.6.22.자구수정)

제45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지정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위원장이 된다.(2013.4.22.인원변경)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졸업·징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 3. 1. 자구수정)

제 11 장 준용규정 등

제48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2011.8.17. 교명변경)(2021.6.22. 개정)

제49조(시행세칙)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2021.6.22. 자구수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이수학점), 제29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제32조(졸업시험)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1호 설치 전공 중 ‘카리타스 학전공’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학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서식 1>

제 000 호 K K O T T O N G N A E U N I V E R S I T Y

학 위 기

성명 홍 길 동
학번 00000000
0000년 00월 00일생

이 사람은 이 대학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의 자격, (카리타스학전공) 문학석사의 자격, (상담심리학전공) 심리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000박사 ○ ○ ○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
000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꽃대 0000(석)000

[별표 1] 제4조(전공과 정원) 관련(2021.6.22. 개정)

사회복지상담대학원 설치전공 및 학생정원표

구분	계열	과정	전공	입학 정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	석사학위	상담심리학전공	10명
특수대학원	인문사회	석사학위	사회복지학전공	30명
			상담심리학전공	
			카리타스학전공	
2개 대학원			4개 전공	40명

[별표 2] 제35조(학위종별) 관련(2021.6.22. 개정)

대학원 학위종별

구분	계열	과정	전공	학위종별
일반대학원	인문사회	석사학위	상담심리학전공	심리학석사
특수대학원	인문사회	석사학위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전공	심리학석사
			카리타스학전공	문학석사
2개 대학원			4개 전공	